

발명장려사업 추진 및 세부

특허청고시 제88~4호 의거 새해

특허청 고시 제88-4호 발명장려사업 추진 요령에 의거한 발명장려사업 추진 세부요령이 발표되었다.

이 요령의 주요내용은 ▲발명장려관 설치 운영 ▲전국우수발명품 및 학생발명품전시회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비 지원 ▲발명품 기업화 추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국제전시

회 출품등 지원 ▲발명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 개최등의 세부적인 내용이다.

요령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국제전시회의 출품비가 80%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발명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의 시상 대상폭이 크게 넓어졌다.

전문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편집자 주>

<前號에서 계속>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외국출원비용 지원</p> <p>제31조 (외국출원비용 지원) 특허청장은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출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2조 (신청인의 자격) 외국출원비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이어야 한다.</p> <p>제33조 (신청절차) ①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인의 거래은행구좌번호가 기입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특허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34조 (신청기간 및 대상) 보조금교부의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기간은 매년 10.1부터 10.31일 까지로 한다. 2. 신청대상은 전년도 10.1부터 당해년도 9.30 사이에 외국출원비용 송금사실이 있는 출원으로 한다. <p>제35조 (교부기준) ①보조금은 출원전별로 40만원 을 교부하되, 외국출원비용이 8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의 50%를 교부한다.</p>	

요령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부터 국제 전시회 출품비 지원등 다양(完)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p>②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보조건수는 5건 범위내로 한다. 다만,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보조건수의 계산은 지정국수를 기준으로 한다.</p> <p>③제33조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결과 신청 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발명자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자에게만 안분 조정한다. 2. 개인발명자 및 중소기업자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자에게 우선하여 교부하고 잔액을 중소기업자에게 안분 제정한다. <p>제36조 (보조금교부) 특허청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교부결정을 하여 신청인의 거래은행구좌로 입금한다.</p> <p>제37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특허청장에게 익년 1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 특허청장이 요청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국제전시회 출품등지원</p> <p>제31조 (출품심사위원회 설치) 회장은 국제발명품 전시회 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특허청 관계관, 변리사, 학계 및 업계와 협회 상근이사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회 상근부회장이 된다.</p> <p>제32조 (출품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출품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국제전시회 출품등 지원</p> <p>제38조 (국제전시회 출품등 지원) 특허청장은 우수발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출품자에 대한 출품보조금 및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9조 (출품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대상) ①출품보조금은 협회가 출품업무를 주관한 국제전시회의 출품으로서 1인당 연간 3건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②보상금은 제1항의 출품중 입상한 발명, 교안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 국제전시회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출품에 수상한 경우에는 그중 격이 높은 1개만에 대하여 지급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 교안품으로 다시 입상한 경우에는</p>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출품심사위원회 설치) ①우수한 발명, 고안을 선별 출품하기 위하여 협회에 출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출품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정하는 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발명품의 기술적 우수성, 다른 국제전시회에의 출품여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③출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지급기준) ①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보조금은 건당 출품비의 80%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상은 200만원이내
 2. 금상(특별상, 준대상포함)은 150만원이내
 3. 은상(금은상 포함)은 100만원이내
 4. 동상은 50만원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출품보조금 및 보상금 총액이 당해년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 조정한다.

제 7 장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제42조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특허청장은 학생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학생발명자 및 우수발명반 운영학교에 장학금 및 발명반 활성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지급대상자 선정) ①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학생발명품전시회 수상자 또는 해당 시,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중에서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지원금 지급대상은 학생발명반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중에서 해당 시, 도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4조 (지급기준) 장학금 및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제45조 (지급시기) 장학금 및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조정

1.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
2.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여부
3. 상품가치성
4. 기타 국제전시회 출품여부

제33조 (출품신청)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출품추천) 회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발명품은 특허청장에게 보고후 출품한다. 단, 동일인이 3건 이상 출품 선정되었을 경우 출품자의 선택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출품자부담을 구분할 수 있다.

제35조 (출품부조금 지원) 회장은 출품심사에서 선정된 발명품의 출품료(카다루게재료 포함) 보조에 대하여 출품보조금과 출품자 부담금을 구분하여 특허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6조 (출품수수료) 회장은 출품에 따른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출품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p>할 수 있다.</p> <p>제46조 (지원금의 사용제한) 지원금은 학생발명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 자재 구입에 사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p> <p>제47조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 발명의 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발명품 기업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제48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의 기업화 가능성 검토 2. 기업화 지원기관(단체)에의 추천 및 발명수요 업체와의 연계 3. 시제품 제작비지원을 위한 심사 등 <p>제49조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p> <p>제37조 (조직) ①본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상근 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회 상근이사가 되며 간사는 협회 발명진흥부장이 된다.</p> <p>②위원은 특허청 관계관, 투, 용자기관 실무담당 책임자, 학계, 업계, 연구소등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p> <p>제38조 (운영) 위원회의 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협회 내규에 의한다.</p> <p>제39조 (전문분과위원회) ①본위원회 결정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상근이사가 된다.</p> <p>③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요원으로 다년간의 경험과 학식이 있는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p> <p>④전문분과위원회에는 협회에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검토, 기술성, 산업성 및 신청인의 자격등을 검토 심의하고 이유를 명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⑤전문분과위원회는 기계(금속포함), 전기(전자포함), 섬유, 화학, 토건, 농수산, 정보통신의 7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3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⑥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40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고시 제88-4호 제48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심의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p>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제41조 (기업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 고안으로서 기업화지원신청이 속하는 당해년도의 말까지 그 권리가 존속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42조 (신청절차 등) ① 발명에 대한 기업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단체)으로부터 평가요청이 있는 발명 또는 협회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발명가등의 신청내용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제43조 (평가방법) ① 전문분과위원회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성 및 관련기술에의 파급효과
2. 시장성(시장규모, 타상품과의 대체성등)
3. 제품의 추정예정가격 및 수지전망
4. 수입대체 및 수출전망

② 신청된 발명품의 지원 요청 내용이 기업화 지원기관 연계대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평가기준에 부합되도록 평가한다.

제44조 (평가절차) 협회에서는 신청서류를 각 분야별로 구분해서 전문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기술성등을 검토케한 후 제39조 제4항의 기준에 의거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45조 (기능) ① 발명에 대한 기업성 평가 신청서류의 접수

- ② 기업성 평가에 관한 기초조사
- ③ 본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상정안건의 처리
- ④ 우수발명의 발굴
- ⑤ 전문평가기관(KIET등)에 평가의뢰 추천
- ⑥ 우수발명의 홍보
- ⑦ 기타 위원회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제 7 장 발명의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 개최

제46조 (행사 개최) 발명의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 행사는 매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다만, 행사개최, 장소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일시 : 5월19일(세종대왕 즉위기 발명일) 10시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3. 주관 : 한국발명특허협회

제47조 (시상) ① 발명사상양양 및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발명진흥유공자상과 발명진흥유공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단체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발명진흥유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국내의 발명품전시회에 입상된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2. 국내 우수발명으로 선정된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3. 우수발명고안의 출원등록실적이 많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4. 발명실시 유공자(개인발명인의 발명품을 실시한 자, 단, 대기업의 직무발명은 제외)
5. 여성발명자
6. 학생발명자
7. 우수발명반 지도교사
8. 발명사상양양 및 특허제도발전에 공이 있는자

③발명진흥유공단체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신고를 특허청에 필한 기업체로서 사내 특허관리제도를 우수하게 운영, 실시하고 있는 우수특허관리업체
2. 발명반 설치신고를 특허청에 필요한 학교로서 교내발명반을 우수하게 운영, 실시하고 있는 우수발명반 운영학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 (신청절차)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나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령에 따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 (공적심사위원회) 회장은 발명진흥유공자와 우수특허관리업체의 시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특허관계관, 변리사, 학계, 업계 및 협회 상근이사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회 상근부회장이 된다.

제50조 (심사기준) ①발명진흥유공자의 공적심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발명특허유공자
 - 공적년수
 - 발명특허 및 기술개발연구실적(발명유공자의 경우)
 - 공업소유권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특허유공자의 경우)
2. 우수발명자, 우수직무발명자, 우수여성발명자
 - 공업소유권의 국내외 등록실적
 - 공업소유권 실시 성공실적
 - 국내외 발명신기술전시회등의 입상실적

특허청 고시 제88-4호 내용

세 부 요 령 내 용

- 기타 산업계의 기여도
 - 3. 우수학생 발명자
 - 협회 주관 발명품전시회 및 작문, 만화현상모집 수상실적
 - 학교내 과학작품전 입상실적
 - 국내의 학생발명전(과학전람회등) 입상실적
 - 본인 명의의 공업소유권 출원 및 등록실적
 - 4. 우수발명반 지도교사
 - 협회 주관 발명품전시회 및 작문, 만화현상모집 수상자를 지도한 실적
 - 국내의 학생발명전(과학전람회등) 수상자를 지도한 실적
 - 발명한 운영내용
 - 5. 발명실시유공자
 - 권리(특허, 실용신안, 의장) 양수건수
 - 양수권리 실시현황
 - 생산 및 판매실적
 - 산업발전의 기여도
- ② 발명진흥유공단체의 공적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우수특허관리업체
 - 전담부서 조직 및 기능
 - 전담요원 연수실적
 -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현황
 - 보유권리 실시현황
 - 직무발명 실시제도 현황
 - 권리분쟁 및 해결
 - 사내 기술개발현황
 - 특허기술정보자료현황
 - 기타 특기사항
 2. 우수발명반 운영학교
 - 발명반 조직 및 구성
 - 협회 주관 발명품전시회 및 작문, 만화현상모집 수상실적
 - 국내의 발명전시회 및 과학전람회 수상실적
 - 발명반 운영연구실적
 - 교내 발명품전시회 개최실적
 - 교내 발명활동자료 보유현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 (포상 추천) 회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상대상자를 특허청장에게 추천한다. (※)